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외무공무원의 적격심사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백유빈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백유빈
건명	외무공무원의 적격심사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4년 2월 16 일

## 소개의견

청원인 백유빈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2016년 2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현황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외무공무원법 제 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는 항목이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외무공무원법 제 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엔 해당 사유가 발생 후, 그에 따른 적격심사 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 처벌을 위한 적격심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정기 적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외무공무원 본분의 책임과 역할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본 청원인이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문
<p>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 시기 및 심사 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25., 2013.3.23.&gt;</p> <p>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학점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p>	<p>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 시기 및 심사 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단,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기적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lt;개정 2011.7.25., 2013.3.23.&gt;</p> <p>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경우</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경우</p> <p>5. 외교통상부 훈령 제 110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추가)</p>
--	--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2004년 평범한 한국 주부 장미정씨는 마약범으로 오인 받아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주범이 잡혀 단순가담이라는 재판 결과 서류 하나만 있으면 프랑스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불한국대사관은 장미정씨의 도움 요청과 가족이 보낸 수십 통의 편지와 전화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아 장미정씨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낯선 타국의 교도소에서 재판도 없이 보내야만 했다. 주불대사관의 단 한명의 외무공무원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무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2015년 8천96건이며, 2011년 4천 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 110호)'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물론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 24조에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적격심사를 행하는 하위 사유에는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보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격심사 실시 기준은 하위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 이는 단지 외무공무원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위한 적격심사에 그친다. 정기 적격검사를 실시한다면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외무공무원을 선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임무 수행과 외무공무원의 책임감 함양과 성실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24조 1항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 시기 및 심사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추가적으로 '단,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기적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나아가 아래 사유에 '외교통상부 훈령 제 110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p>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 시기 및 심사 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25.,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li> <li>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경우</li> </ol>	<p>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① 외무공무원(제13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라 한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 시기 및 심사 대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기적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심사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25.,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사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3년에 이른 경우</li> <li>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환을 2회 받은 경우</li> <li>5. 외교통상부 훈령 제 110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li> </ol>

청원인 성명 : 백유빈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